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도레이케미칼(주)(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3에 의거 2015년 10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마이크로필터 사업을 분할하여 티씨케이마이크로필터(주)(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이의제출 대상: 도레이케미칼(주)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 이의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34층 자금IR팀
- ◆ 이의제출 기간: 2015년 10월 27일 ~ 2015년 11월 29일

2015년 10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02
도레이케미칼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 이 영 관
니시모토 야스노부
박 찬 구 (직인생략)